



페이닥터의 데모(Demo)시술 중 발생한 사고, 병원의 대표원장에 게도 책임이 지워질까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사건(서울고등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2052130 판결)에서 법원은 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Demo)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생긴 사건에 관하여 의사의 사용자인 대표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홍보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A의사로부터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A의사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세포 재생 촉진에 작용하는 모자이크 프락셀 레이저 기계를 구입하면서 해당 기계를 이용한 시술을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A의사를 고용하였다. A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기 전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었으나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A의사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데모시술을 무료로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에 원고가 참여를 자원하여 A의사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시술 시행 직후부터 36군데의 시술 부위가 움푹 파이고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고,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원고의 얼굴에 큰 면적의 흉터가 남게 됐다.

원고는, A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A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대표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A의사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일반의로서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기계와 다른 종류의 기계만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당시 정확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였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 흉터가 남을 경우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얼굴에 곧바로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였는바, A의사에게 의료상 과실 및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A의사의 사용자에게 해당하고 A의사가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시술 시행 당시 피고가 직접 감독하였는지, 피고가 시행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해당 사건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레이저 시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은 피용자인 소속 의사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대표 원장의 사건에 대한 인지, 실질적인 감독여부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병원의 대표원장은 소속 의사의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주기적인 감독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K PARTNERS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대걸 변호사/회계사

TEL. 02 565 9801

E-mail. dkjeong@lkpartner.co.kr